이 문서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보안문서로서 외부 반출을 금합니다.

문서번호	시설안전팀-4462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7.07.18
공개여부	공개

★담당자	팀장	건설안전본부장	사장
고정일	김태환	김승호	07/18 박현출
협 조	팀장 팀장		윤덕인 권기태
감 사	감사실		감사실

가락시장 가설건축물 설치계획(안)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농협(공), 대아청과㈜)

2017. 7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시설안전팀

이 문서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보안문서로서 외부 반출을 금합니다.

이 문서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보안문서로서 외부 반출을 금합니다.

가락시장 가설건축물 설치계획(안)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농협(공), 대아청과㈜)

목 적

○ 농산물 안전성검사를 위한 임시창고 설치
○ 농산물 상품성유지, 안심먹거리 제공을 위한 비가림시설 설치
○ 공영도매시장 운영을 위한 현장 임시사무실 설치

1. 관련근거

- 시설안전팀-3969호(2017.6.28.) "2017년도 제1차 가설건축물심의회 결과 보고"
-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강남농수산물검사소-11657호(2016.12.2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사용에 따른 협조 요청"
- 농협경제지주 가락 23105-52호(2017.5.22.) "채소경매장 비가림시설(이동형자바라) 설치승인 요청"
- 대아청과(주) 총무2017-31호(2017.6.2.) "가설건축물 신규설치(출하자/운송기사 편의시설)승인 요청"
- 대아청과(주) 총무2017-34호(2017.6.16.) "가설건축물 이전공사 설치변경 승인 의뢰"

2. 가설건축물 설치계획(안)

가. 대지현황

- 대지소유자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대지위치(지목)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600 (垈)

나. 가설건축물 설치 개요

구 분	2017년도 제1차			
	의안 제1호	의안 제2호	의안 제3호	의안 제4호
건 축 주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농협(공)	대아청과㈜	대아청과㈜
바 닥 면 적	27㎡	98.04㎡	65.70㎡	56.10㎡
건 축 면 적	27㎡	98.04㎡	84.30㎡	89.69㎡
대지사용면적	27㎡	98.04㎡	84.30㎡	89.69㎡
층 수	1층	1층	2층	2층
동 수	1동	1동	2동	2동
설 치 구 조	컨테이너	이동식자바라(천막)	컨테이너(필로티)	컨테이너(필로티)
설 치 용 도	임시창고	비가림시설	임시사무실	임시사무실

이 문서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보안문서로서 외부 반출을 금합니다.

이 문서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보안문서로서 외부 반출을 금합니다.

다. 설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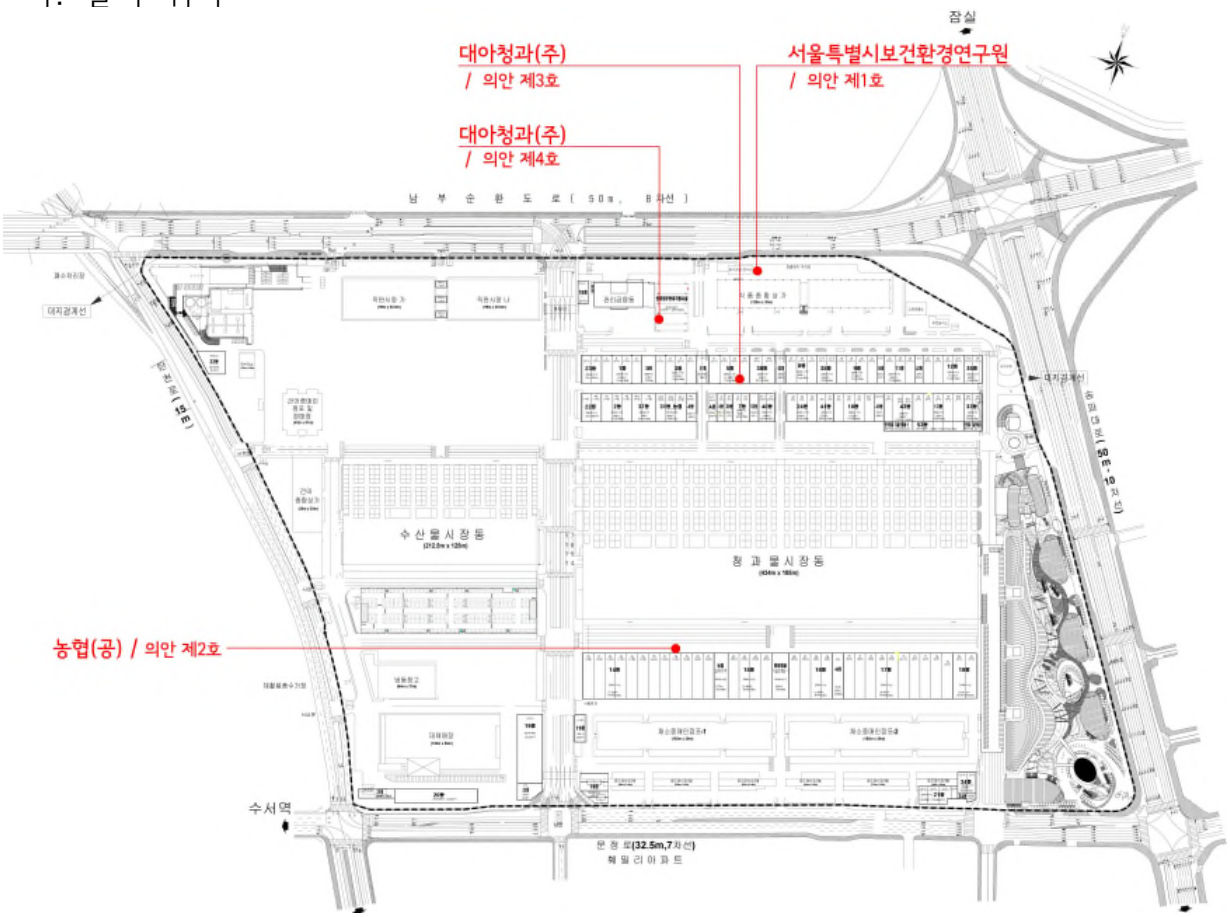

(가락시장 배치도)

3. 2017년도 제1차 가설건축물심의회

가. 일　　시 : 2017년 6월 27일 화요일　10:00~10:30

나. 장　　소 : 가락몰 업무동 14층 시설안전팀 회의실

다. 참 석 자

- 가설건축물 심의회 위원

구분	소속	성명	참석여부
위원장	건설안전본부장	김승호	참석
위　원	기획팀장	권상구	참석
위　원	재무팀장	김진중	참석
위　원	유통물류팀장	윤덕인	참석
위　원	농산팀장	강성수	참석
위　원	수산팀장	최영규	불참
위　원	환경교통팀장	김인수	참석

※ 의안 제2,3,4호에 대해 유통물류팀장은 소관부서장으로 해당 안건 심의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함

- 간　사 : 시설안전팀장 김태환

이 문서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보안문서로서 외부 반출을 금합니다.

이 문서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보안문서로서 외부 반출을 금합니다.

라. 소관부서

- 의안 제1호 : 유통조성팀
- 의안 제2,3,4호 : 유통물류팀

마. 안　　건

- 의안 제1호 :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임시창고(컨테이너) 1동 신축
- 의안 제2호 : 농협가락공판장 비가림시설(이동식자바라) 1동 신축
- 의안 제3호 : 대아청과(주) 임시사무실(컨테이너) 1동 신축
  (2017-4번 대아청과가설건축물-2 건축면적,연면적 변경)
- 의안 제4호 : 대아청과(주) 임시사무실(컨테이너) 1동 신축
  (2017-4번 대아청과가설건축물-1 건축면적 변경)

바. 심의 결과

- 의안 제1호 : 원안 승인
- 의안 제2호 : 원안 승인
- 의안 제3호 : 원안 승인
- 의안 제4호 : 원안 승인

4. 가설건축물 신축 승인조건

가. 특기사항

(의안 제1호 _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임시창고(컨테이너) 1동 신축)

㉮ 본 시설의 설치,관리,철거 비용은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이 부담한다.

㉯ 시설현대화사업, 시장의 기능유지 또는 공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설치자의 부담으로 즉시 철거한 후 원상복구하며, 시설물 및 공작물, 설비 등에 지출한 비용과 관련되는 필요비 및 유익비를 청구하지 않는다.

㉰ 가설건축물의 승인용도 이외로 사용을 금지하며,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하고 즉시 해당 가설건축물을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의 비용으로 철거한다.

㉱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은 본 시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안전사고 및 화재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며, 본 시설의 설치, 사용, 철거 등에 따른 제반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이 문서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보안문서로서 외부 반출을 금합니다.

이 문서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보안문서로서 외부 반출을 금합니다.

(의안 제2호 _ 농협가락공판장 비가림시설(이동식자바라) 1동 신축)

㉮ 본 시설은 우천시 비가림용도로 사용하며, 설치,관리,철거비용은 '농협가락(공)'이 부담한다.

㉯ 설치공사시 통행인의 불편이나 안전사고가 없도록 조치하고, 공사용 잔재물은 농협가락(공) 책임하에 도매시장 밖으로 반출한다.

㉰ 경매장 운영시간외에는 도로 및 주차장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 가설건축물의 승인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며,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하고, 즉시 해당 가설건축물을 '농협가락(공)'의 비용으로 철거한다.

㉲ '농협가락(공)'은 본 시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고, 안전사고 및 화재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며, 본 시설의 설치, 사용, 철거 등에 따른 제반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시설현대화사업, 시장의 기능유지 또는 공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농협가락(공)'의 부담으로 즉시 철거한 후 원상복구하며, 시설물 및 공작물, 설비 등에 지출한 비용과 관련되는 필요비 및 유익비를 청구하지 않으며, 대체공간을 요구하지 않는다.

(의안 제3호 _ 대아청과(주) 임시사무실(컨테이너) 1동 신축)

㉮ 본 시설은 출하자, 운송기사 휴게실 용도로 사용하며, 설치,관리,철거비용은 대아청과(주)가 부담한다.

㉯ 설치공사시 통행인의 불편이나 안전사고가 없도록 조치하고, 공사용 잔재물은 대아청과(주) 책임하에 도매시장 밖으로 반출한다.

㉰ 경매장 운영시간외에는 도로 및 주차장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 가설건축물의 승인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며,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하고, 즉시 해당 가설건축물을 대아청과(주)의 비용으로 철거한다.

㉲ '대아청과(주)'는 본 시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고, 안전사고 및 화재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며, 본 시설의 설치, 사용, 철거 등에 따른 제반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시설현대화사업, 시장의 기능유지 또는 공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대아청과(주)'의 부담으로 즉시 철거한 후 원상복구하며, 시설물 및 공작물, 설비 등에 지출한 비용과 관련되는 필요비 및 유익비를 청구하지 않으며, 대체공간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문서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보안문서로서 외부 반출을 금합니다.

이 문서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보안문서로서 외부 반출을 금합니다.

㉲ 본 시설은 2016년 제3차 가설건축물심의회 결과 신축승인된 대아청과가설건축물-2와 동일 철재구조물(필로티) 위에 신축하는 건으로, 본 시설 설치후 기존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한 대아청과가설설건축물-2는 말소처리한다.

(의안 제4호 _ 대아청과(주) 임시사무실(컨테이너) 1동 신축)

㉮ 본 시설은 2016년 제3차 가설건축물심의회(의안 제10호)에서 승인된 건으로, 본 건에 대한 승인조건은 기제출된 2016년 제3차 가설건축물심의회 의안 제10호(제출일:2016.12.9.) 이행확인서를 준수할 것

㉯ 변경된 내용대로 송파구청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할 것

㉰ 본 시설 설치후 기존 신고된 가설건축물축조신고건은 말소할 것

- 2017-4번, 대아청과가설건축물-1

나. 공통사항(의안 제1,2,3,4,호)

㉮ 가설건축물 신축을 위한 설계도서는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에 의뢰하여 작성토록 할 것

㉯ 설치공사 관련 기술적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시설안전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의 건축공사와 가스공사 또는 전기공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의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토록 할 것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 시설공사 착공전 우리공사에 착공계를 제출토록 할 것

㉲ 가설건축물 설치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사용료 및 제세공과금 등은 설치자가 부담할 것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2년으로 하고, 존치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소관부서(유통물류팀)의 확인을 받아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송파구청에 존치기간 연장신고할 것(의안 제1호의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함)

5. 행정사항

가. 의안 제1호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임시창고(컨테이너) 1동 신축)

㉮ 가설건축물 승인조건에 대한 이행확인서 징구(유통조성팀)

㉯ 가설건축물 설치에 대한 사장승인방침 수립(시설안전팀)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 송파구청 건축과)

이 문서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보안문서로서 외부 반출을 금합니다.

이 문서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보안문서로서 외부 반출을 금합니다.

㉱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제출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 시설안전팀)
㉲ 가설건축물 승인조건 이행확인(유통조성팀)

나. 의안 제2호 (농협가락공판장 비가림시설(이동식자바라) 1동 신축)
㉮ 가설건축물 승인조건에 대한 이행확인서 징구(유통물류팀)
㉯ 가설건축물 설치에 대한 사장승인방침 수립(시설안전팀)
㉰ 착공계 제출 (농협가락(공) → 시설안전팀)
- 설계도서
- 공사도급계약서

㉱ 시공관리(시설안전팀)
㉲ 준공계 제출 (농협가락(공) → 시설안전팀)
㉳ 가설건축물 승인조건 이행확인(유통물류팀)

다. 의안 제3호 (대아청과(주) 임시사무실(컨테이너) 1동 신축)
㉮ 가설건축물 승인조건에 대한 이행확인서 징구(유통물류팀)
㉯ 가설건축물 설치에 대한 사장승인방침 수립(시설안전팀)
㉰ 착공계 제출 (대아청과(주) → 시설안전팀)
- 설계도서
-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 시공관리(시설안전팀)
㉲ 준공계 제출(대아청과(주) → 시설안전팀)
㉳ 기존 신고된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말소 처리(대아청과(주) → 송파구청 건축과)
- 2008-45번 105동, 112동, 114동
- 2017-4번 대아청과가설건축물-2

㉴ 가설건축물 승인조건 이행확인(유통물류팀)

라. 의안 제4호 (대아청과(주) 임시사무실(컨테이너) 1동 신축)
㉮ 가설건축물 설치에 대한 사장승인방침 수립(시설안전팀)
㉯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제출 (대아청과(주) → 시설안전팀)
㉰ 시공관리(시설안전팀)
㉱ 준공계 제출(대아청과(주) → 시설안전팀)
㉲ 기존 가설건축물축조신고건 말소(대아청과(주) → 송파구청 건축과)
- 2017-4번 대아청과가설건축물-1

㉳ 가설건축물 승인조건 이행확인(유통물류팀)

붙 임 : 1. 2017년도 제1차 가설건축물심의회 결과보고 1부
2. 이행확인서 각1부
3. 도면 각1부. 끝.

이 문서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보안문서로서 외부 반출을 금합니다.